

사업주 확인 내용

##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정정 문답서

아래 작성하는 확인 내용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퇴사사유 확인 및 실업급여 수급여부 판단, 각종 지원금 지급 여부에 활용될 자료이며, 허위 진술시에는 **고용보험법 제108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**가 부과되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게 할 경우와 고용안정사업 등의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과 관련될 경우 **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고발될 수 있으니** 사실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『사업주를 대신하여 사무대행기관이 작성할 경우 사업주의 위임장과 작성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주 확인 내용은 사업장 담당 또는 대표자, 권한 위임자가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』**

1. 사업장(회사)의 기본 정보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사업장 명 :	
■ 사업장 주소:	
■ 대표자 성명:	■대표자 주민번호:
■ 연락처:	
■ 고용보험 사업장 관리번호 :	

2. 이직자(퇴직자) 관련 정보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성 명 :	
■ 주민번호 :	■ 담당업무 :
■ 퇴사일 :	
■ 연락처 :	

3. 퇴직자에 대한 최초 이직확인서 접수는 누가 하였습니까?

(※성명, 주민번호, 직책,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)

4. 현재 본 문답서를 작성하고 있는 분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(※성명, 주민번호, 직책,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)





## 문답서 제출관련 거짓진술과 거짓문서 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 안내

우리법(고용보험법) 제108조(보고 등) 제1항에 의하면,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, 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(이하 “보험사무대행기관”이라 한다) 및 보험사무 대행기관이었던자에게 피보험자의 자격 확인,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,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 고 적시하고 있습니다.

- 위 법조항 위반 시, 같은 법 제118조 제1항 제4호(과태료 규정)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###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4호 (과태료 규정)

○ 제108조제1항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, 같은 요구에 불응하여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하지 아니한 자

위 관련 법 조항을 숙지하고, 문서의 제출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.

담당자 성명 : (서명 또는 인)

제 출 자 : 사업장 대표 \_\_\_\_\_ (서명 또는 인)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 귀하



